

제18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

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(2012. 5. 24)

# 규칙안 검토 보고서

의 회 운 영 위 원 회

[전문위원 김성목]

## 【 목 차 】

3.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-----	2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[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]  
[           검    토    보    고    서           ]

### 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2. 05. 17.
- 나. 제 출 자: 강철우, 류영수, 김재권의원
- 다. 회부일자: 2012. 05. 17.

### 2. 제안이유

- 가. 현행 의장단 선출방법은 후보자의 등록절차 없이 본회의에서 의장·부의장으로 선출할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 선출하게 되므로 후보자의 정견발표 기회가 없어
- 나. 의장단 후보자에 대하여 등록과 아울러 정견발표를 청취할 수 있도록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개정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일 2일 전 의회사무과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하며, 등록을 한 의원만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지며, 등록된 의원은 다른 선거에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. (안 제5항)
- 나.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에 정견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는 다선(多選), 연장자 순으로 하고 본인의 정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. (안 제6항)

## 4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8조

## 5. 검토의견

- 의장·부의장 선출 방식은 대부분의 지방의회에서 후보없이 선출하는 이른바 교황 선출방식으로 운영 하다가 문제점을 지적하여 후보등록 방식으로 변경하는 자치단체가 있는 실정으로
- 의장·부의장 선출방식은 지방의회 의원정수 등 여건에 따라 나름대로의 장·단점이 있을 수 있고
- 또한 의장단 선거 및 피선거권의 주체가 의원 각 개인임으로 의원님들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선출 방식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 관계법령

## □ 지방자치법

### 제5절 의장과 부의장

제48조(의장·부의장의 선거와 임기) ①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시·도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·부의장 선거는 최초집회 일에 실시한다. <신설 2011.7.14>

③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<개정 2011.7.14>

제49조(의장의 직무)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(議事)를 정리하며,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.

제50조(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) 지방의회의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제51조(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) 지방의회의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.

제52조(임시의장)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.

제53조(보궐선거) ①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(闕位)된 경우에는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.

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이나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제54조(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) 제48조제1항, 제52조 또는 제53조 제1항에 따른 선거(이하 이 조에서 "의장등의 선거"라 한다)를 실시하는 경우에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으면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,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11.7.14>

- 제55조(의장불신임의 의결) ①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 
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불신임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 
찬성으로 행한다.
- ③ 제2항의 불신임의결이 있으면 의장이나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.